

[사 건 명] 행심 2017 - 24

학교 후문 설치 불가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0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후문설치 불가에 따른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6. 14. ◇◇◇◇초등학교 후문설치 동의에 대하여 팩스민원으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6. 23. ◇◇◇◇초등학교 후문설치 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6. 2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7. 7.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관내 65개 초등학교 중 학교경계 주변 이 대로변, 야산, 언덕 등 후문 설치가 어려운 9개교(◇◇초 포함)를 제외한 56개교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후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후문 설치 시 5분 이상 단축되는 길을 두고 기존의 정문만 고집하고 있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명분 없는 독선으로 보인다.
- 나. ■■■■■■■■■■■■■■■■■■■■■아파트(●●2차아파트)는 설계 및 분양 단계 부터 입주자에게 후문 개설을 공고하여 분양된 아파트인데 공사마무 리 단계에서 피청구인측에서 후문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재량 권 남용이다.
- 다. 후문설치에 따른 외부인 출입 통제의 어려움, 무단 침입자로부터의 학교 시설보호, 학생의 안전보장, 학생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으로 피 청구인은 후문 설치가 불가하다 주장하지만 후문은 정문의 보조 수단 으로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외부인 통제가 어렵다면 “표준 가이드라인 교육부 2014.3.31.시행”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등· 하교 시 학생에게 개방하고 나머지 시간은 통제하고, 외부출입자는 정문을 이용하도록 운영하면 될 것이다.
- 라. 현재 ◇◇초의 담장, 울타리는 높이가 약 1미터 밖에 되지 않아 후문 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단지 내 학생들의 월담이 가능하여 안 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측의 울타리 설치 예산을 감 안하면 건설사에서 무상으로 시공하는 후문 설치가 예산절감이 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거리 단축(대략 150미터)과 편의성, 아파트 분양 당시 아파트와 학교 사이의 4개의 후문 또는 쪽문이 도면에 있다는 이유로 후문 또는 쪽문 개설을 요구하지만, 건설 당시의 학교 도면(정문 1개소) 확인, 학교 진입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승인 도면에 대한 문의 결과 사업승인 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분양 당시 건설사에서 홍보하기 위해 쪽문을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 나. 후문설치는 일부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도 고려해야겠지만 전체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 교육적 효과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공동체(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후문 설치 불가 결정하였다.
- 다. 현재 모든 아파트의 통학거리는 5~15분 거리이며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2차)의 통학거리가 가장 짧고 차도를 건널 일이 없으며, 후문 설치에 따라 새로운 통학로 확대는 기존 □□□□□□□□□□□□□□□□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횡단보도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에 따른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 라. 학교건물과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2차)의 높이단차(교사 옆쪽은 1m, 교사 뒤쪽은 1.2m)가 있고, 울타리도 1m정도 높이로 둘러싸여 있어 후문이나 쪽문 개설로 문이 잠겨 있으면 학생들이 담을 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다.
- 마. 후문 또는 쪽문 설치 예상 장소가 현재 통행량이 적은 후미진 곳으로 숲이 조성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사 뒤편은 사각지대로 학생들이 현재 사용하

지 않는 장소로 후문설치가 부적합한 장소이다.

바. 후문 설치에 따른 추가 안전배움터지킴이 채용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며, 안전지킴이 상주 건물 배치 공간 확보 또한 용이하지 않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2조

행정심판법 3조 1항

행정심판법 제13조

##### 2. 판 단

######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7. 11.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이고, 현재 서울 △△구 ■■로 ㉠길 ▲▲▲▲에 거주하고 있다.
- (2) 청구인의 두 자녀는 초등학생으로서 현재 이 사건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아니다.

## 나. 이 사건 청구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1) 청구인 적격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는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법률상 이익은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7. 11.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이지만, 이 사건 청구 당시 청구인의 두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만큼, 피청구인의 후문설치불가라는 통보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후문을 개설하여 후문을 통하여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2) 처분대상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의 처분의 의미는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학교후문설치 불가통보가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청구인의 학교후문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피청구인이 학교후문을 설치하여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7. 11.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이지만, 이 사건 청구 당시 청구인의 두 자녀가 ◇◇◇◇

초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만큼,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당시 ◇◇◇◇◇ 초등학교 후문을 개설하여 후문으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따라서 후문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청구인에게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학교의 후문설치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고, 학교의 후문설치는 학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피청구인은 반드시 후문설치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학교후문설치 요구는 단순한 민원사항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 사건 본안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청구인 적격이 없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만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